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2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1호)하면서,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 등 소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2조의7)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 이관 조문

나. 공장의 건축면적 등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안 제62조의8)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이관 조문

다.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62조의9)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이관 조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정안 제62조8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안 제62조의10)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이관 조문

마. 중소기업청장이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11)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 이관 조문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2-481-4576, Fax : 042-472-6958)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의7(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2조의8(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9(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의10(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62조8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의11(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

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부 록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 11. (생 략) <u><신 설></u>	2. ~ 11. (현행과 같음) <u>제10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u>
<u><신 설></u>	<u>제62조의7(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u>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u>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u> 2. <u>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u> 3. <u>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u> 4. <u>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신 설></u>	<u>제62조의8(공장설립에 관한 특례)</u> ① <u>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u>

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9(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10(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62조8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2조의11(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창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